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030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0302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나11431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202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채규달

피고, 상고인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요섭

2. 부안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

판결 선고2020. 3. 27.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나114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등기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부안군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망 J이 1973. 8. 10.경부터 또는 피고 B가 1986. 4. 19.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 추정력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